

명예의 의의와 명예훼손의 모습

권 오 승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명예는 외적 명예 즉 각 사람이 그 정성 · 덕행 · 명성 · 신용 등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평가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인은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자는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한편 법인도 그의 활동 분야에서는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술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명예훼손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진술이 원고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진술은 공표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의 모습에는 부당한 권리행사, 법정에서의 발언, 피의자에 대한 고소, 위법한 공무집행, 신문보도, 주간지 · 월간지 등의 출판, 공동절교 등이 있는데, 오늘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보도나 라디오 · 텔레비전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I. 머릿말

대륙법계에서는 인격권 중에서 명예권이 가장 오래 전부터 불법행위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것은 로마 법상의 인유리아(iniuria) 소권의 발전 속에서 인정되어 근대대륙법에 계수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19 세기의 독일 법학은 명예의 보호를 오로지 형법에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법상의 보호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으며, 독일 민법에서도 명예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명예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촉진된 것은 그 후의 학설 · 판례의 노력의 결과이며, 오늘날에는 명예는 일반적인 인격권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영미법에서는 불법행위법으로서의 명예훼손법(defamation)은 독자적인 전개를 보이고있으며, 오늘날에는 복잡한 체계를 가진 제도로 되어 있다.¹⁾ 우리 민법에서는 「명예」가 불법행위법상의 보호를 받을 것이 명기되어 있으며(민법 751 조), 이 규정과 불법행위의 일반법리에 따라 명예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유감스럽게도 이에 관한 판례가 별로 없고, 또 이에 대한 논문도 보이지 않아, 본고에서는 영미법 및 일본법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명예의 의의, 명예훼손의 당사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의 모습등에 관해서 차례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명예의 의의

일반적으로 명예는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명예는 외적 명예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내적 명예라 함은 사람의 본체적인 가치 즉 진실의 명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의 일신에 갖추어져 있는 도덕 · 품위 · 성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과 같은 순수한 눈에 의하여 판단되는 사람의 경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존재이며, 타인에 의하여 침해되어 변경될 수도 없으며, 따라서 그 회복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내적 명예는 이를 창조하는 자도 이를 파괴하는 자도 바로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예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보호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또 적합하지도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 육체적 일체인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업적, 능력 등과 같은 것까지도 포함한 것에 대한 진실의 가치이다. 이에 반하여 외적 명예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회의 평가 또는 가치판단 혹은 사람에 대한 사회의 사실적 · 주관적인 평가라고 한다. 그 자체에 동요가능성이 있는 사회의 주관적인 눈에 의한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침해에 의하여 저하될 수도 있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내적 명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신적 · 육체적 일체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에 대한 평가이다.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양자간에는 논리적으로는 영원한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2) 그런데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명예는 외적 명예 즉 각 사람이 그 품성 덕행 · 명성 · 신용 등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평가이다.") 이는 명예훼손을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며,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침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명예를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 상황 등을 참작하여 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4)

III. 명예훼손의 당사자

1. 자연인은 누구나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은 피해자 개인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명예훼손을 기초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있다. 예컨대 원고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와 혼인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말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는 그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5) 그런데 명예훼손의 당사자로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자의 경우와 법인의 경우이다.

2. 사자의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그것에 의하여 사자의 근친자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자 자신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6) 그러나 사자의 명예를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가능한데 (형법 제 308 조 참조),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사자에 대한

기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구제방법으로서는 명예훼손사실의 유지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법인의 명예훼손

법인은 그 성질상 개인적인 의미의 사회적 평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과 같이 순수히 개인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는 말에 의하여 명예가 훼손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인도 그가 활동하는 거래분야에서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실성, 신용, 능력, 기타 기업적 성격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조합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도 법인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7) 자선단체와 같은 비상업적 단체는 공공의 기부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이러한 사회적 기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공격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단체는 그의 기관, 주주, 피용인들을 가리키는 말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그들은 그 단체를 가리키는 말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말이 양자를 서로 연관시켜서 양자 모두를 비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이다.8) 법인의 명예훼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사죄광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9), 종래의 판례에서는 법인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설 중에는 법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사죄광고만으로는 부적당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있고, 또 항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는 것이 많고10), 오늘날의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위자료와 구별하며 무형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으며11), 최고재판소도 이를 승인하고 있다.12)

IV.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명예훼손이 되는 진술을 공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술의 명예훼손성, 명예훼손적 진술의 해석, 진술의 원고와의 관련성, 진술의 공표, 명예훼손적 진술에 대한 책임의 성질 등이 문제되는데, 이를 영미법상의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진술의 명예훼손

종래에는 그 진술이 원고로 하여금 증오심이나 모욕감 혹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으나, 이러한 정의는 그 개념이 지나치게 좁아서, 예컨대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라든가, 가난뱅이라든가, 사생아라든가, 암 환자라든가, 강간당한 여자라든가 혹은 성불구자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점잖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표현을 포함할 수가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평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즉 원고에 대한 존경이나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반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생각이나 불유쾌한 감정을 촉구할 우려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불명예(disgrace)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컨대 어떤 사람을 공화당원이라고 하는 진술은, 많은 민주 당원들로 하여금 그에게 반감을 갖게 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한 존경심을 손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아 그것이 그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가 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¹³⁾ 어떤 진술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 진술이 행하여진 시간·장소·사정 등도 고려된다. 예컨대 영국과 독일의 전쟁이 영국쪽에 유리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독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함부로 내뱉은 욕지거리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진술에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 진술이 진실에 기초하고 있거나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말다툼 중에 함부로 내뱉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¹⁴⁾ 원고의 직업 또는 거래상의 무능력을 비방하는 진술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원고가 만든 상품이 저질이라든지 혹은 어떤 영화평론가가 무자격자라든지 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회사, 상인조합,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그 진술에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어야 하지만, 진실이 아닌 진술이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사업에서 손을 뗐다고 말하는 것은, 원고의 평판에 아무런 손상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이 악의로 행하여졌거나 혹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¹⁵⁾

2. 명예훼손적 진술의 해석 : 풍자(Innuendo)

피고의 진술이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의미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의 진술은 전체로서 판단되어야지, 어느 일부분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진술을 상상해 보라 : 「너는 도둑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다. 」 그러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여러 진술 속에 간접적으로 암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러한 의미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관이 그 진술이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루이스 대 데일리 텔레그래프(Lewis v, Daily Telegraph, 1964) 사건에서는, 피고신문이 런던시경의 사기조사반이 원고회사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상원(House of Lords)은, 비록 그 진술이 원고가 사기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원고가 실제로 사기죄를 범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는 진술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 진술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만약 피고가 「A가 B에게 사기혐의를 두고 있다」고 말한 경우에는,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되는데 반하여,

피고가 A가 그에게 「B가 사기죄를 범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면, 이것은 B가 실제로 사기성이 있다는 것이 되어,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되게 된다(M'Pherson v. Daniels, 1829). 이것은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아도 정당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실제로 사용한 단어에는 명예훼손적인 의미가 없지만,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톨레어(Toller v J. S. Fry and Sons Ltd; 1931) 사건에서는, 피고회사가 그들의 광고에, 아마추어 골퍼(golfer)로 잘 알려진 원고가 자기회사의 초코렛을 좋아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만화를 그려넣은 것에 대하여, 그 광고는 원고가 광고에 나와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그의 아마추어의 지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선언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광고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그가 아마추어 골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또 그들이 그 광고에서 그가 주장하는 의미를 간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원고가 피고의 진술 속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 진술의 명예훼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의 소장에 그러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⁶⁾

3. 진술의 원고와의 관련성

피고의 진술이 원고에게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진술이 원고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피고의 진술 속에 원고의 이름이 실제로 지적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고가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하다. 그러나 예컨대 「의사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거나 혹은 「흑인들은 모두 게으름뱅이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피고의 진술이 원고를 포함한 불특정다수를 지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할런지는 모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집단이 작아서 피고의 진술이 그 구성원의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은 그 피고에 대하여 제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피해자의 특정성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인데, 예컨대 단순히 서울 시민이라든지 혹은 부산 시민이라든지 또는 월급장이들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그 대상이 막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¹⁷⁾ 그러나 집단이 비교적 적고 또 집단원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단에 대한 비방에 의하여 집단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동경고재 소화 29. 5.11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치회를 조직하고있는 화교들의 명예를 해하는 신문보도에 대하여, 자치회 및 자치회 회원, 전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기사취소광고를 명하고 있다.¹⁸⁾ 둘째로-특정인의 명칭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누구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한다. 이른 바 모델사건이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즉 주교성일의 소설 「흰마어」의 여주인공의 실가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명예훼손이 제소된 사안에서, 소설과 사실은 동일성이 없고 유사성은 우연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 정도로는 모델로

했다는 것을 추인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¹⁹⁾피고의 진술에 대한 원고의 관련성이 계획적일 필요는 없다. 피고가 어떤 작품 속에서 원고를 지칭하는 별명을 쓰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사람들에게 의하여 그 별명이 원고를 지칭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경우에는, 충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된다(Hulton v. Jones (1910)). 한편 어떤 사람에 대한 진실한 진술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챔버웰에 살고 있는 30 세의 헤롤드 뉴스테드 (Harold Newstead)는 중혼으로 처벌되었다는 신문기사는 챔버웰에 살고있는 동명의 술집감독에게는 사실이었으나, 동일한 곳에 살고 있는 30 세 가량의 동명의 이발사에게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사는 헤롤드 뉴스테드라는 이발사에게는 명예훼손이 되었다. (Newstead v. London Express Newspaper, 1931) 그 진술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명시적으로 원고를 지칭할 필요가 없음은 명백하다. 예컨대 캐시디 대 데일리 미러지(Cassidy v. Daily Mirror Newspapers, 1929)에서는 두 사람은 불의의 생활을 했었다는 기사와 함께, 캐시디가 어떤 여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 실렸는데, 이 기사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캐시디의 부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불의의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오인 시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캐시디의 부인에게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였다.²⁰⁾

4. 진술의 공표

진술의 타인에게의 공표는 명예훼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²¹⁾ 피고가 그 진술을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에 이 요건이 충족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피고가 그것의 공표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편지의 발송인이 그것이 수신인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봉되어 읽힐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표의 여부가 결정된다. 예컨대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편지를 개봉한 경우에는 공표가 없었던 것으로 되고, 비록 편지가 밀봉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인이 주인을 위하여 이를 개봉한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우편엽서가 읽혀지리라는 것, 원고가 고용하고 있는 비서가 원고의 사무실로 온 사무용으로 보이는 편지를 개봉하리라는 것, 그리고 비록 밀봉되어 있고 그의 아내의 이름으로 온 것이기는 하나, 여러 사람에게 붙이는 편지(circular)로 보이는 아내의 편지를 남편이 개봉할 수 있다는 것(Theaker v. Richardson, 1962) 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그의 진술이 공표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에 엉뚱한 자가 나타나서 그 자에 의하여 그 진술이 유포될 경우에는, 공표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White v. Stone Lighting and Radio Ltd 1939) 그 진술이 공표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누구를 위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진술이 다른 사람의 주문에 의하여 타이핑되거나 인쇄된 경우에, 그것이 바로 그 주문자에게 건네진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는 것이 된다(Eglantin Inn Ltd. v. Smith and Smith, 1948). 피고가 그의 부인에게만 알려 준 경우에는, 비록 그 부인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표는 없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진술이 공표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진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나 말의 의미를 알아 들을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 그러나 타이피스트에게 그 진술의 내용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표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Pullman v. Hill and Co, 1891) 다른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명예훼손적 진술을 반복하는 사람은, 비록 그가 그 진실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반복이 공표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 진술의 원본을 작성한자는, 그가 그러한 복사를 허용하였거나 또는 이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복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며, 명예훼손적인 자료의 저자, 출판자 및 인쇄자는 물론 신문판매인, 서점, 도서관과 같은 기계적인 배급자도 그 자료를 대중에게 공표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책임을 지게 된다. 물론 이들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²²⁾ 그러나 문제는 피고가 그러한 공표를 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기록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어떤 기록자에게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말했으나 이의 보도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영국법은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진술의 작성자의 책임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마 그것이 그 다음에 공표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명예훼손적 사실을 제기하지 못한 것도 공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 대한 제한은 아직 잘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²³⁾ 이에 관하여 일본의 판례는 타인의 사회적지를 훼손하는 사실을 제 3자에게 표백한 경우에는, 그것이 아직 사회에 널리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의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즉 내연의 처가 간통 가게죌도둑(shoplifting) 등을 한 사실을 그 부 및 실부에게 알린 사안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고있으며,²⁴⁾ 또 소송당사자를 비방하는 진술서를 담당 재판관에게 제출할 사안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유포의 정도는 위법성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 즉 조정 중에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잘못된 주장을 꾸짖은 사안에 대해, 조정은 비공개적이고, 더욱이 상대방이 대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²⁶⁾ 한편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무례한 언사를 한 것에 대하여, 그 발언이 서장실에서 행하여졌으며, 제 3자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하였다.²⁷⁾

5. 명예훼손적 진술에 대한 책임의 성질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다른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우선 피고가 고의로 일정한 진술을 했어야 한다. 예컨대 피고의 컴퓨터가 어떤 기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적 진술을 산출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게 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진술의 명예훼손성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만약 그가 그 진술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그 진술이 원고에 관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명예훼손은 일종의 엄격책임에 해당한다.²⁸⁾

V. 명예훼손의 모습

여기서는 주로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명예훼손의 모습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²⁹⁾

1. 부당한 권리행사

명예훼손은 부당한 권리행사에 수반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다. 우선 채권자가 이익을 행사함에 있어서 폭력이나 폭언을 사용한 경우,³⁰⁾ 혹은 채권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 3자의 소유물을 압류함으로써 그 제 3자의 명예 및 신용을 침해한 경우가³¹⁾ 이에 해당된다. 한편 지급정지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여 이를 공고한 것은 채무자의 신용을 해치는 것이 되며,³²⁾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면제받은 자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증서는 거짓 작성된 것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여, 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종류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³³⁾ 한 것이 있는가 하면, 보증한 사실이 없는 변호사에게 은행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믿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은행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한 것³⁴⁾도 있다.

2. 법정에서의 발언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때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변론주의·당사자주의를 기조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기탄없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예컨대 횡령사건에서 증인이 상대방의 불신행위를 공술한 경우³⁵⁾, 소송 당사자에 대하여 「둘째(처), 셋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가」라는 취지의 반대신문을 한 경우,³⁶⁾ 폭행에 의한 불법행위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의 행위는 원고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경우³⁷⁾ 등은 그 발언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준비서면에 기재된 모욕적인 문언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에게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고 한 것도 있다.³⁸⁾

3. 피의자에 대한 고소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범인이 아닌 것을 범인이라고 고소·고발함으로써 피고소인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고죄의 대상이 되지만(형법 156조),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두고서 이를 범죄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여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인의 동일성이나 기타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범죄의 혐의를 두기에 상당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된 연후에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개인이 범죄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혐의자를 통보하여 수사에 협력하는 것은, 공익상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인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한 연후에 범인이라고 생각되어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범인과 비슷한 자를 범인이라고 통지한 경우에, 과실이 없다고 한 것 39)이 있다. 이에 반하여 13 세의 어린아이가 밤중에 순간적으로 인식한 사실을 경신하여 고소한 것 40) 경우, 어떤 물건을 자기 스스로 유실하였으면서 타인에게 절도당한 것으로 맹신하여 여기에 혐의를 둔 경우, 41) 스스로 조사해 보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만 가지고 절도죄로 고소한 경우, 42) 범인의 코밑에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진범이라고 단언한 경우 43) 단순히 범인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만 가지고 고소한 경우 44) 또는 10 개월 전의 기억을 유일한 근거로 하며 범인이라고 속단한 경우 45) 등에 있어서는 각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참고인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그 결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게 된다. 46)

4. 위법한 공무집행

공무원 특히 경찰관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경찰관이 직무상 변호사에게 행한 고압적 또는 모욕적인 언사, 47) 착오에 의한 체포 48) 등이 문제된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신문기자 등에게 범죄사실을 발표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을 때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 49)

5. 신문보도

오늘날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문 등 매스컴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신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때문에 때로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여유없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신문중에는 영리적인 입장에서 독자에게 영합하며 공인이나 사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즐겨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보나 사생활에 관한 기사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은 전일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한편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보도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초라는 점에 비추어, 개인의 명예를 지나치게 존중한 나머지 매스컴의 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문제는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이익을 여하히 조화할 것인가에 귀착되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개개의 사안에 따라 고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일본의 최근판례는 과실이론과 위법성이론을 활용하며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결론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관의 법의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분야도 있다.⁵⁰⁾ 우선, 신문은 대중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도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력과 독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특히 「표제」나 「서두」 등이 문제가 된다. 예컨대 「대규모 마약단……본거」로 시작되는 서두가 진실에 반한다고 한 것⁵¹⁾이 있고, 그밖에 표제가 문제된 것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청년을 권총으로 협박』,⁵²⁾ 『타협에 실패한 위자료 100 만엔』⁵³⁾, 『재판장, 취조관과 거래』⁵⁴⁾ 등이 모두 명예훼손의 일인을 이루고 있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기사의 진실성이 문제된다. 이는 특히 영미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⁵⁵⁾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 310 조가 사실적시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불법행위에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신문보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을 공익목적을 위하여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작용할 여지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사가 사생활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진실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피보도자의 사회적 지위 및 그 사사로운 행위의 내용, 정도 등이 문제로 될 것이다. 예컨대 신문이 추사를 게재한 것에 대하여 그 기사가 비록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또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해 배상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⁵⁶⁾이고, 이에 반하여 제은사건 혐의자의 사사로운 행위를 보도한 것을 문제삼은 사건에서는, 그 기사가 사사로운 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본인 및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신문의 정당업무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⁵⁷⁾ 신문기사의 진실성의 입증책임은 신문사측에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신문보도의 신속성의 요구로 인하여, 기사의 주요부분이 진실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한다.⁵⁸⁾ 이 점과 관련하여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단순한 추측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강도협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할 경우,⁵⁹⁾ 단순한 혐의자를 범인이라고 주장·단정한 경우,⁶⁰⁾ 기소사실 중 일부밖에 유죄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유죄라고 보도한 경우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보도라고 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진실성이 입증되어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는 많지 않다. 아마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제소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신문사측에서 기사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명예훼손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무과실책임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으로는 취재기자 및 편집데스크에 관한 문제가 된다. 취재기자가 확실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 취재할 경우, 예컨대 수사관의 의견을 그대로 믿고 그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⁶¹⁾ 부가 제출한 가출인보호원에 기하여 처의 가출을 보도한 경우,⁶²⁾ 사건관계번호사로부터 청취한 것 이외에 전혀 구체적인 자료없이 재판장이 취조관과 거래했다고 보도한 경우,⁶³⁾ 혹은 당국의 발표를 오해한 경우,⁶⁴⁾ 또는 수사당국이 발표한 사실을 과장하거나 자기의 견해를 첨가한 경우⁶⁵⁾ 등에 있어서는 취재기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취재가 정확하더라도 편집한계에서 윤색이 가해진 경우에는

데스크의 과실이 인정되게 된 바 66) 이에 반하여 권위 있는 수사당국의 발표에 기하여 취재하며, 그것을 그대로 보도할 경우에는, 비록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칙 적으로 신문사측에는 과실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67) 한편 과실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긴급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68)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9) 신문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보도기사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논평기사에 관한 것도 문제된다. 이 경우에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에는 명예권 침해가 될 것이다.70) 그러나 여기에서는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견상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것과 같은 평론을 발표한 경우에도, 그 의견이 정당한 비판이고, 또 그것이 공익에 관한 것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선거에서의 정견방송 및 신문지상에서 공개장으로 정적을 비판한 것과 71) 학자의 사사로운 행위에 대하여 논평을 가한 것은,72) 모두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한 논평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73)

6. 기타의 출판물

신문이외에 주간지, 월간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다. 다만 잡지는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구가 비교적 적기때문에, 진실성에 대한 광의의무는 한층 무겁게 요구된다. 논평에 대해서도 신문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일본 의사회의 기관지에서 『범죄적부덕행위』 등이라고 비판한 것에 의하여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측에 실제로 그러한 부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에 대한 정당이익의 옹호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것이 있다.74) 한편 관생사건의 변호사의 증인신문기술을 「소피스트적」이라고 논평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관하여 다투어진 사안에서는, 제 1 심, 제 2 심의 결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증언도 나누어지고 있다.75)

7. 공동절교

촌락공동체에서 종종 행하여지고 있는 이른바 공동절교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기타 인격권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촌락공동체를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락민 전원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를 위하여 비협력자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사적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종래의 판례는 이 문제를 주로 형법상의 위법성의 각도에서 취급해 왔다. 예컨대 초기에는 공동절교행위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여 바로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76)도 있으나, 공동절교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한 경우도 있다.77) 그러나 그 후의 판례에서는 사소한 사유를 구실로 하여 공동절교를 통고했다고 하여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많이 있다.78) 그런데 공동절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절교자가 한 행위와 공동절교의 모습·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위법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판례로서는, 어떤 부락의 주민이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땅 20 평을 제공할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동절교 된 사안에 대하여, 주모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것이 있다.⁷⁹⁾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그 절교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쌀의 공출할당보정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쌀의 공출에 관하여 특별취급을 할 것을 결의한 것에 대하여, 제 1 심에서는 이 결의는 사회 감정상 시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반하여,⁸⁰⁾ 그 항소심에서는 이것은 공동절교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⁸¹⁾ 한편 소작인에게 소작지의 반환을 요구한 지주를 농민조합으로부터 제명하고, 그밖에 일체의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이를 실행할 것에 대하여, 이것은 사실상 공동절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인격권 및 자유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인정한 것도 ⁸²⁾ 있다.⁸³⁾

VI. 맺는 말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명예는, 외적 명예 즉 각 사람이 그 품성 ·德行 ·명성 ·신용 등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평가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인은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자는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한편 법인도 그의 활동분야에서는 일정한 사회적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술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명예훼손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진술이 원고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진술은 공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적 진술에 대한 책임의 성립에는 다른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 ·과실이 요구되지만, 영미법에서는 이를 일종의 엄격책임으로 보고 있다. 명예훼손의 모습에는 부당한 권리행사, 법정에서의 발언, 피의자에 대한 고소, 위법한 공무집행, 신문보도, 주간지 · 월간지 등의 출판, 공동절교 등이 있는데, 오늘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보도나 라디오 · 텔레비전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명예권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조화가 문제된다.

<주>

- 1) William L. Prosser, 「Tort」, 4th Ed., West publishing Co., 1971, pp.737-801 참조.
- 2) 원등호, 「명예의 개념과 명학의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일고찰-춘팔분에 한정하여」, 아처환력 · 손해배상책임의 연구(상), pp.426-427 참조.
- 3) 일대판 명치 39. 3 19 민록 12. 226.
- 4) 오십풍청, 「인격권의 침해」, 주석민법(19), p.185.
- 5) Prosser, op. cit., pp.744-745.
- 6) Prosser, op. cit., p.745; 동경지판 명치 36. 11.20 신간 175. 17.
- 7) 대판 1965. 11.30, [65 다 1707].

- 8) Prosser, op. cit., pp.745-746.
- 9) 대판지판, 대정 7. 9.17, 신간 150. 16.
- 10) 장곡부, "법인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주리스트 185 호, 43.
- 11) 동경지판, 소화 30. 7.11. 하민 6. 7.1297.
- 12) 일최판, 소화 39. 1.28, 민집 18. 1. 136.
- 13) William L. Prosser, 「Law of Torts」, Fourth Ed., West publishing Co.,1971.9.739.
- 14) C. D. Baker, 「Tort」, 3rd Ed., London Sweet & Maxwell,1981, pp.240-241.
- 15) Ibid., p.241.
- 16) Ibid., pp.241-242.
- 17) 일대형판, 대정 15. 3 14. 신문 2562, 13 참조.
- 18) 총본,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부-NHK의 여우모욕방송을 중심으로", 히로바 8 권 10 호 참조.
- 19) 기부지판, 소화 34. 3 28. 판례시보 182. 17 참조.
- 20) Baker, op. cit., pp.243-244.
- 21)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원고가 장성한 자식들과 동거하고 있는 과부이므로 피고와 정교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부락 사람들에게 유포시켰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고 있다. [대판 1967. 7.25 (67 다 1000)].
- 22) Ibid., pp.246-247.
- 23) Ibid., pp.244-246.
- 24) 대판, 대정 5. 10.12, 민록 22.1879.
- 25) 김택지판, 소화 30. 8. 18, 하민 6. 8.1641
- 26) 장야지반전지판, 소화 31. 4. 9, 하민 7. 4.903.
- 27) 동경고판, 소화 35. 9. 12, 하민 11. 9.1885.
- 28) C. D. Bater, op. cit., p.246.
- 29) 오십남청, 전계논문, pp.187-193 참조.
- 30) 대판지판, 소화 35. 1. 14, 하민 11. 1.15, 다만 그것이 채무자측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된다.
- 31) 일대판, 명치 38. 12. 8, 대판 명치 39. 2.19, 민론 12. 226.
- 32) 대판 명치 43. 4 5, 민록 16.273.
- 33) 대판, 대정 8. 2.24, 민록 25.328.
- 34) 횡병지판, 소화 33. 1.17, 하민 9. 1.23.
- 35) 횡병지판, 소화 23. 9.11, 하민 1. 9.1438.
- 36) 동경지판, 소화 26. 9.27, 하민 2. 9.1138.
- 37) 동경지판, 소화 31. 11. 5, 하민 7. 11.3129.
- 38) 대판지판, 소화 35. 3. 7, 판례 타임즈 107. 67.
- 39) 광도지현지판, 소화 31. 2. 6, 하민 7.2.234.
- 40) 대판, 소화 3. 10.11, 신문 2922. 7.

- 41) 송강지방법, 소화 26. 8.10, 하민 2. 8.1020.
- 42) 산구지방법, 소화 27. 8.29, 하민 3.8.1181.
- 43) 선합고판, 소화 28. 3.25, 하민 4. 3.427.
- 44) 대판고판, 소화 29. 12.25, 하민 5. 12.2106.
- 45) 동경고판, 소화 35. 2.25, 판례 타임즈 101.61.
- 46) 岐阜지판, 소화 29. 2.11, 하민 5.2.161.
- 47) 동경지판, 소화 33. 3.24, 하민 9.3.492. 다만 항소심인 동경고판 소화 35. 9. 12, 하민 11.9.1885에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취소되었다.
- 48) 우도궁지판, 소화 35. 5.16, 판시 234.9, 항소심 : 동경고판 소화 36. 5.11
「판례시보」 260.6, 이것은 숙박 중에 있는 변호사를 범인으로 오인하고 경찰서에 연행한 경우이다.
- 49) 동경지판, 소화 32. 7. 3 「판례시보」 125.8, 대를지판 소화 33. 8.12, 하민 9.8.1573.
양자 모두 과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 50) 신간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특히 납산정도이소야청일낭외, 「신문의 책임」, 소화 31 참조.
- 51) 일최판, 소화 31. 7.20, 민집 10.8. 1059.
- 52) 광도지판, 소화 26. 9. 6, 하민 2. 9.1067 이 사건의 항소심인 광도고판 소화 29. 10.14
고민 7 11.885에서는, 표제에서는 다소 표현이 과장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취소되었다.
- 53) 동경고판, 소화 32. 10.16, 하민 8. 10.1928.
- 54) 천엽지판, 소화 36. 5.17, 하민 12.5.1156.
- 55) Prosser, op. cit., p.796 이하 참조.
- 56) 일대형판, 소화 3.20.21, 「평론」 17, 형 160.
- 57) 전게 동경지판, 소화 25. 7 13.
- 58) 대판지판, 소화 33. 1.17, 「판례시보」 140.22.
- 59) 경도지판, 소화 26. 3. 8, 하민 2.3.353.
- 60) 갑부지판, 소화 31. 2. 2, 하민 7. 2.200.
- 61) 경도지판, 소화 26. 3. 8, 하민 2.3.353.
- 62) 대판지판 소화 33.1.17, 「판례시보」 140.22.
- 63) 전게 천엽지판, 소화 36. 5 17.
- 64) 전게 신호지판, 소화 25. 3.28.
- 65) 동경고판, 소화 31. 7.31, 하민 7.7.2058, 경도지판, 소화 31. 9 7, 하민 7, 9.2433.
- 66) 동경지판, 소화 31. 11. 5, 하민 7 11.3108.
- 67) 전게 복강고판, 소화 28. 1.16, 동경지판, 소화 31. 5.21, 하민 7, 5.1314.
- 68) 전게 동경고판, 청화 32. 10.16.
- 69) 동경지판, 소화 28. 9. 8 하민 4.9. 1263.
- 70) 대판, 명치 43. 11. 2, 민론 16.745.
- 71) 덕도지판, 소화 28. 6.24, 하민 4. 6.926.

- 72) 전계 동경지판, 소화 33. 6. 7.
- 73) 이 점에 관하여는 기대, "미국법에 있어서의 명예훼손과 Fair Comment", 「말연환력 · 영미사법론집」 참조.
- 74) 전계 일최판, 소화 38. 4. 16.
- 75) 동경지판, 소화 36. 9.21, 하민 12. 9.2331, 2 항소심인 동경고판, 소화 38. 9.26, 「판례시보」 348. 13.
- 76)일 대형판, 명치 44. 9. 5, 형록 17. 1520.
- 77)일 대형판, 대정 2. 11.29, 형록 17. 1520.
- 78)일 대형판, 대정 9. 12.10, 형록 26.912, 일 대형판대정 13. 6.20, 형집 3. 506. 일 대형판, 소화 29.20, 형집 6.361……
- 79) 일 대형판, 대정 10. 6.28, 민록 27. 1260.
- 80) 우도당지판, 소화 25. 1. 일불명 하민 1. 1.116
- 81) 동경고판, 소화 27. 5.30, 하민 3. 5.730.
- 82) 고송지구구지판, 소화 30. 3. 1, 「판례시보」 61. 22.
- 83) 원등, 전계논문 참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 박사과정수로
- 저술 : 「경제법」 (공저), 「현대사회의 소비자의 지위와 권리」, 「서독의 계약강제이론」 외 다수
- 현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